

서울특별시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16
----------	------

2017년 2월 2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7년 2월 6일
- 다. 회부일 : 2017년 2월 6일
- 라. 상정일 : 제27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2월 2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교육정책관 김 용 복)

가. 제안 이유

-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특화시설로써,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신규)으로 운영하고자 함.
- 자유학기제 전면시행('16년),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도입 등 교육정책 환경변화와 직업체험 수요증가에 따라 은평구 소재 서울혁신파크 내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를 건립·운영하는데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단체에 민간위탁(신규)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함.
-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조직담당관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시설개요

- 시설명 :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내 15동)
- 시설규모 : 2,334㎡(2,3,4층 및 5층 일부)
- 준공일자 : 2017. 10월 예정 ※2018. 상반기 개관 예정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다.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9.1. ~ 2020.12.31.)
- 위탁사무
  - 청소년 맞춤형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 청소년의 창의적 직업체험 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 대안적 삶과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 교육 과정 운영
  -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 그 밖에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 소요예산('17년) : 60백만원

#### 라.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마. 민간위탁 필요성

-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과 대안적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지역자원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직업과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주요기능을 하게 되며,
-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급변하는 직업 환경, 교육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 진로교육 정책, 청소년 정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소년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 편성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가. 민간위탁의 개요

- 본 동의안은 교육정책 변화와 청소년의 직업체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직업 체험센터(서울혁신파크 내, 은평구 소재)를 설치하고, 이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 진로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sup>1)</sup>)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운영중인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영등포 소재) 개요 ]

- 개 관 일 : 1999.12.18('10년 신관 신축)
- 수탁기관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 이 용 자 : 83만명(청소년 60만명, 2015년 기준)
- 연간예산 : 4,104백만원(市 보조금 1,727백만원, 2016년 기준)
- 운영방향 : 문화생산과 직업교육이 결합된 대안적 청소년 문화활동

- 주 5일제 시행과 진로, 동아리, 예술·체육 활동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유학기제의 도입으로 청소년의 직업체험교육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서울시는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1개소만<sup>3)</sup> 운영하고 있어, 증가하는 직업체험수요를 공공기관이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는 청소년의 직업탐색 과정을 지원하고, 기존 센터의 모델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서북권(은평, 본 동의안의 대상)과 동북권(노원) 2개소의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의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계획' 중 시설개요]

	은평(본 동의안의 대상)	노원
소재지	은평구 통일로 684(사회혁신파크 내)	노원구 노원로 16길 6-21
구분	사회혁신파크 15동 건물 리모델링	신축
규모	2,334㎡(2,3,4층 및 5층 일부)	3,099㎡(지하 1층, 지상 3층)
총사업비	5,130백만원	9,368백만원
추진현황	리모델링 공사 계약 및 착공	이주보상 및 설계용역('17.상반기)

-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에서는 1회성 체험시설만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고, 최근 통계청의 조사에서 청소년의 직업선택의 기준이 흥미나 적성보다는 경제적 요인(안정성과 수입)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20~24세 청소년은<sup>4)</sup> '직업(41.4%)'을, 13~19세 청소년은 '성적과 적성을 포함한 공부(50.4%)'에 대해 가장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sup>5)</sup>

2) 프로그램 확산 : 최근 3년간 '하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162개 유관기관에 전파(국내 126개, 국외 36개) 연계기관 수('15년 기준) : 학교(236개), 유관기관(25개), 지역자원(8개)

3)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별칭 "하자센터", 1999년 개관, 연83만명 이용, 2016년 예산 : 41억원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5) 통계청, 2014 청소년 통계(요약), "7. 고민하는 문제" 발췌

<청소년의 직업선택의 주된 요인>

(단위: %)

	계	명예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흥미	지아성취	발전성	기타
청소년	100.0	3.6	21.3	27.0	34.2	6.4	6.1	1.4
남자	100.0	4.9	22.2	28.0	31.6	5.4	6.4	1.4
여자	100.0	2.3	20.3	25.9	36.9	7.4	5.7	1.4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만13~24세 대상, '기타'항목에 '모르겠음' 포함.

##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추진일정]

2014.7월~8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가건립 기본계획 수립
2016.1월~10월	설계용역(서울혁신파크 조성 일환으로 추진)
2016.12월	시립은평·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계획 수립
2016.12월~2017.하반기	리모델링 공사(서울혁신파크 조성 일환으로 추진)
2017.상반기	수탁기관 공모·선정,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개관준비
2018.3월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 개관

- 청소년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과 선택의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인프라 확충은 의미있다고 하겠음.

### 다.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의 적정성

- 본 민간위탁은 2개의 법과 2개의 조례를 추진 근거로 청소년활동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등 청소년진로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고 있음.

「청소년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사무는 청소년의 직업체험 관련 프로그램개발, 청소년 활동지원, 교육과정운영 등으로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무이고, 청소년과 직업체험 관련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은 충족하는<sup>6)</sup> 것으로 보여짐.
-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사무로 보고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진로지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교육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b>「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b> <b>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b>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                          |                          |
|--------------------------|--------------------------|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 직업체험교육이 실질적으로 진로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 사무 중 “대안적 삶과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 교육과정 운영”, “미래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등의 사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아닌 시장의 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음.

※ 현재 운영중인 시립직업체험센터에서는 단순한 직업체험이 아닌 생애설계로서 통합적인 진로교육이 시행되고 있음. **커리어데이**(“삶을 어떻게 살것인가”를 주제로 진로특강 및 소그룹워크숍), **청소년 토요일학교**(넓은 범위의 진로를 인식할도록 함.) **하자작업장 학교**(진로설계 프로젝트)

-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비전 : 지속가능한 삶의 설계를 위한 청소년 진로 활동 허브
-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의 3대목표 중 첫 번째 목표 : 생애설계로서의 진로개발역량 강화모델 확충

※ 자치구는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7)’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교육청의 직업·진로 관련 필수 프로그램을 자치구 특색에 맞게 사업에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직업체험을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음.

○ 각 자치구의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의 수탁업체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직업·진로의 전문성보다는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활동에 관련된 기관을 수탁하고 있는 단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바,

본 시설의 수탁업체 선정시 청소년 직업체험 분야의 전문성보다는 민간위탁 선정사무와 절차에 특화된 단체들이 선정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의 경우 투명성, 객관성, 공공성 확보 곤란 등을 예견할 수 있어, 수탁기관의 선정 절차에서 역량있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선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서울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추진 일정]

2017.2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2017.7월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2017.8월	비용심사, 협약서 적정성 심사
2017.8월	협약체결
2017.하반기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개관 준비
2018.3월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 개관

7) 첨부1. 각 자치구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현황(2016년 기준)

연번	교육청	자치구	개소일	운영기관	유형	연락처
1	동부	동대문구	2014.09.30	(주) 기업가정신	위탁	02)6239-2020
2		종로구	2014.03.13	사회복지협회회	위탁	02)469-5689
3	서부	마포구	2013.09.11	(사)한국청소년재단	위탁	02)303-2605
4		서대문구	2013.06.21	홍은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02)395-1318
5		은평구	2013.05.25	은평청소년수련관	위탁	070-7113-4923
6	남부	구로구	2014.05.13	(주) 한양인재개발원	위탁	2689-8753~5
7		금천구	2012.11.01	금천구청	직영	02)2627-2823
8		영등포구	2014.08.01	(주) 기업가정신	위탁	02)2636-6521~3
9	북부	노원구	2012.10.19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위탁	02)936-3326
10		도봉구	2013.06.03	한계레 교육법인	위탁	02)2091-2343
11	중부	용산구	2013.06.28	푸른나무청예단	위탁	070-7165-1034
12		종로구	2015.05.28	종로구청	직영	02)2148-1985
13		중구	2013.09.11	중구청소년수련관	위탁	02)2250-0580
16	강동	강동구	2012.06.26	(주) 기업가정신	위탁	02)481-7088
17	송파	송파구	2014.05.09	(사) 한국청소년연맹	위탁	02)404-2386
14	동작	동작구	2014.05.23	(사) 청소년전략21	위탁	02)815-3371
15	관악	관악구	2015.04.16	(주)한양인재개발원	위탁	02)873-8815
18	강서	강서구	2013.10.07	서울서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위탁	02)2699-8723
19	양천	양천구	2014.11.28	양천구청	직영	02)2084-5414
20	강남	강남구	2013.10.17	(사) 홀리비전	위탁	02)550-3627
21	서초	서초구	2014.04.02	(주)한양인재개발원	위탁	070-7204-2014
22	성동	성동구	2013.02.06	성동구청	직영	02)2286-6164
23	광진	광진구	2014.05.27	(사)흥사단	위탁	02)2004-3135
24	성북	성북구	2013.05.22	성북문화재단	위탁	02)2038-2132
25	강북	강북구	2015.02.04	학교법인 광운학원	위탁	02)6715-6680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616
----------	------

제출년월일 : 2017년 2월 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특화시설로써,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신규)으로 운영하고자 함
- 나. 자유학기제 전면시행('16년),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도입 등 교육정책 환경변화와 직업체험 수요증가에 따라 은평구 소재 서울혁신파크 내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를 건립·운영하는데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단체에 민간위탁(신규) 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함
- 다.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실시한 결과(조직담당관 민간위탁 평가위원회),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개요

- 시설명 :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내 15동)
- 시설규모 : 2,334㎡(2,3,4층 및 5층 일부)
- 준공일자 : 2017. 10월 예정 ※2018. 상반기 개관 예정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9.1. ~ 2020.12.31.)
- 위탁사무
  - 청소년 맞춤형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 청소년의 창의적 직업체험 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 대안적 삶과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 교육 과정 운영
-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 그 밖에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 소요예산('17년) : 60백만원

####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1호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라. 민간위탁 필요성

- 시립은평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과 대안적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지역자원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직업과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주요기능을 하게 되며,
-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급변하는 직업 환경, 교육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 진로교육 정책, 청소년 정책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소년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청소년담당관 청소년시설팀 임선희(☎2133-4124)